

윤 리 강 령

2022. 8. 1

아이오니아에너지 주식회사

윤리강령

아이오니아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안전, 진실성, 고객가치, 협력, 도전을 핵심가치로 삼아 고객, 구성원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기업윤리를 구현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있다. 회사는 이를 위하여 회사의 경영활동 및 임직원의 직무수행 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마련한다.

1. 고객에 대한 자세

회사의 임직원은 고객에게 높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성실한 자세와 봉사하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자세

회사의 임직원은 주주와 투자자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익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며,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여 투명경영 체계를 확립한다.

3. 임직원의 자세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자율적으로 업무에 임하며 임직원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을 고취한다.

4.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회사의 임직원은 협력회사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하며,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서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5. 국가와 지역사회에 대한 자세

회사의 임직원은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와 자원보전에 최선을 다한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자세

제1조(고객의견 존중과 신뢰형성)

- 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정당한 요구는 성실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 ②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 고객에게 신뢰를 받도록 한다.
- ③ 고객의 불만사항이나 제안사항 등을 접수하는 채널을 개발, 유지하여 고객의 의견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한다.

제2조(고객만족 및 봉사)

- ① 고객은 회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임을 명심하여,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
- ② 높은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가치를 창출하여 고객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③ 고객의 만족과 안전을 위하여 제품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

제3조(고객에 대한 자세)

- ① 적극적으로 고객의 의도를 파악하고, 겸손하며 친절한 태도로 성의 있게 응대한다.
- ② 회사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밝은 표정과 올바른 예절로 대한다.
- ③ 고객이 있는 곳에서 잡담을 하거나 회사의 기밀이나 임직원의 결점을 말하지 않는다.

제2장 주주와 투자자에 대한 자세

제4조(주주와 투자자의 권익보호)

- ① 주주와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공정하고 경제성이 있는 보답을 위하여 전문적인 책임경영을 한다.
- ② 주주와 투자자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시키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합리적인 투자와 효율적으로 경영한다.
- ③ 주주와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 제안, 불편 및 공식적 결정에 대하여 존중하고 이를 경영에 반영한다.

제5조(투명한 경영)

- ① 기업경영에 관한 법령과 원칙을 준수하고,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록, 관리하여 투명경영 체계를 확립한다.

- ② 주주와 투자자에 대하여 법이나 경쟁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사의 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기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제3장 회사와 임직원의 자세

제1절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6조(임직원 존중)

- ①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환경 조성, 복지후생시설 확충 등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한다.
- ② 회사는 경영활동 및 목적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장려하여 임직원들의 업무 및 회사 전반의 업무개선에 참여하도록 한다.

제7조(공정한 대우)

- ① 회사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 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② 업무 수행 시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서는 최대한 배려한다.

제8조(안전관리)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관리(WHSE)에 우선순위를 두고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제9조(자기개발 지원)

- ①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여건을 조성한다.
- ② 모든 임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하고 계발하여 경력을 쌓아가도록 최대한 장려하고 지원한다.

제10조(노사간 상호 신뢰와 화합)

- ① 노사 상호간에 법규를 준수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생산적 노사 관계를 마련한다.
- ② 회사는 노사간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여 조직 내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절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 의무

제11조(핵심가치 경영이념과 경영방침의 공감)

- ① 임직원은 회사의 핵심가치와 경영방침을 공감하고 이를 업무 수행 시 최우선의 가치와 원칙으로 삼는다.
- ② 임직원은 업무상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신뢰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회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사명감 및 솔선수범)

- ① 임직원은 회사의 공동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개인과 소속 부서 및 각 사업부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적극 협력한다.
- ② 임직원은 제반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며, 회사의 이익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 ③ 임직원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심하고 기업경영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행동하는 모범을 보인다.

제13조(이해충돌 회피)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충돌을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 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행동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공·사 구분 등)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접속 등 업무상 용도 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임직원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정보의 기밀유지와 안전사고 예방)

- ① 임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회사 관련 정보는 기밀로 철저히 관리하며 회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다.
- ② 임직원은 안전(WHSE)관련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한다.

제17조(정치참여 금지)

- ① 임직원은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행동한다.
- ②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 시간 중에는 정치 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3절 임직원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

제18조(상호간 직장예절)

- ① 임직원 상호간에 신뢰와 성실로 대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향하는 공동체 의식과 따뜻한 동료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임직원들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의 기본예의를 지키고, 자기 자신은 물론 임직원 상호간에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주의를 기울인다.

제19조(상호간 금품 등 수수 및 금전 거래 금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직원 사이의 금품, 향응제공, 편의의 수수와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제20조(성희롱 금지)

- ① 임직원 상호간 성적 굴욕감과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언행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 ②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가해자는 관계 법령 및 회사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4장 협력회사에 대한 자세

제21조(평등한 기회 부여)

- ① 회사는 협력회사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기회를 제공한다.
- ②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여 서로에게 이익이 되도록 한다.

- ③ 임직원은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협력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오해받을 행위는 삼가 한다.

제22조(공정한 거래)

- ① 협력회사와의 모든 거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거래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 회사에게 부당한 요구 등의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② 협력회사와 정당한 상품을 정당한 가격으로 공정하게 거래하여 상호간 이익이 되도록 한다.
- ③ 모든 거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 거래 행위는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과 다르게 실제 거래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거래 당사자간 합의 하에 계약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제23조(공정한 거래)

회사는 윤리경영을 협력회사에 전파·홍보하여 협력회사가 회사의 윤리경영에 동참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제5장 지역사회와 국가에 대한 자세

제24조(사회적 책임)

- ① 정당한 이익 창출을 통해 영속 기업으로 유지·발전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발전에 공헌한다.
- ② 제반 법규 및 사업 영위 지역의 법규, 조례, 관습, 문화,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를 준수하여 지역사회와 국가의 건전한 문화형성에 기여한다.

제25조(사회공헌활동)

- ① 기업이윤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하여 문화적·사회적 차원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 ② 사회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공헌 활동 및 봉사 활동을 지원하며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한다.

제26조(환경 보전)

- ① 사업에 수반되는 환경 문제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대책을 강구하고, 환경오염의 방지와 자연보호에 최선을 다한다.
- ②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환경 관련 법령과 회사의 제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환경 친

화적 기업을 지향한다.

제27조(조세의무)

- ① 회사는 고의로 조세 의무를 회피하지 않으며 회사의 모든 거래를 기록하고 유지·보관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들의 수입과 관련하여 과세 가능한 모든 항목을 나열하고 과세용으로 신고한다.

제28조(법규 준수)

- ① 국민 경제를 해치거나 국민 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체의 행위는 하지 않는다.
- ② 국제협약, 부패방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 관련 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법규 등 국내외의 부패방지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제6장 보 칙

제29조(보칙)

- ① 회사는 윤리경영과 관련하여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우려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신고함을 홈페이지에 제공한다.
- ② 회사는 신고사항을 감사에게 처리하게 하고,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 ③ 윤리강령의 구체적인 윤리강령 행동규범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부 칙

- 1. 이 윤리강령은 2022년 8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이하의 윤리강령은 정관을 제외한 회사의 모든 내규에 우선한다.

윤리강령 행동규범

2022. 8. 1

아이오니아에너지 주식회사

윤리강령 행동규범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범은 회사의 임직원이 직무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사원"이라 함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인사규정상의 관리직사원과 기능직사원 전체를 말한다.
2. "임원"이라 함은 회사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모든 경영진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라 함은 임직원, 고객, 주주, 협력회사, 지역사회 및 국가 등 임직원의 의사결정과 행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
4. "뇌물"이라 함은 회사의 부패방지규정의 정의에 따른다.
5.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6.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금품 등"이라 함은 뇌물, 선물 또는 향응 등을 말한다.
8. "이해상충 행위"라 함은 임직원이 회사 업무 수행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한다.
9. "위반행위"라 함은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윤리 강령, 기타 내부규정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윤리강령 행동규범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일용직포함)에게 적용한다.

제4조 (핵심가치, 경영이념과 경영방침의 공감)

- ① 임직원은 업무과정에서 행하는 의사결정과 행동이 회사의 명성과 신뢰에 직결됨을 항상 명심하고 '건전한 판단에 의한 올바른 행동'을 한다.
- ② 임직원은 회사의 핵심가치, 경영이념과 경영방침을 공감하고 최우선의 가치와 원칙으로 삼는다.

제5조 (임직원의 직무윤리)

- ① 상급자가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서를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임직원은 사적인 이익과 회사 이익 사이에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이익을 우선하여 의사결정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에 의하여 금품 등의 수취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의 감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연, 학연, 혈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관련되거나 배우자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인척과 관련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의 기피 여부 등에 관하여 회사의 감사와 상담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④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된 제반 법령, 윤리강령 및 사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타업 종사 및 사적 지분 참여 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해관계자가 경영하는 회사의 임원(이사, 고문, 컨설턴트 등의 지위) 및 직원으로 고용되거나 지분참여, 투자 등을 통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주는 다른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 행위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사내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거나,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거나 유출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사내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과 결탁 또는 공모하여 유가증권 시세조정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 수취 금지)

- ① 임직원은 이해관계자로부터 뇌물·선물 또는 향응·편의를 제공받아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 2.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선물 등
 - 3.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 4.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 ②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허용 범위를 초과한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사의 감사에게 신고 후 지체 없이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제공 금지)

- ① 회사는 부패방지규정에 따라 금품수수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③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선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회사 임직원은 고객에게 선의에 의해 합리적인 비용 내에서 관습이 허용하는 범위의 골프접대, 식사제공,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직권남용 등 부당행위 금지)

- ① 회사 임직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해관계자와 부당한 거래를 하거나 임직원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해관계자에게 장래에 피고용 등 혜택을 요구하거나 혜택제공 제의를 수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 청탁을 하거나 회사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임직원은 자신의 승격, 이동, 보직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승격, 이동, 보

직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회사 재산의 보호)

- ① 임직원은 회사 자산을 회사 업무 외에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 자산(부동산, 자금, 각종 기기)을 도난, 분실 및 오용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② 회사의 비용은 반드시 당해 업무수행을 위한 건전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카드와 각종 소모품 등을 개인 용도로 활용하거나, 허위증빙을 통하여 회사 자금을 전용하거나 유용 또는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회사정보 불법유출 금지)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사내외에 유출하거나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비밀 및 정보를 적정한 승인 없이 사내외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금지)

- ① 임직원은 제3자 소유의 소프트웨어 등을 불법 복제하여 회사업무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회사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저작권, 인터넷상의 정보 등)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근무시간 내에 회사의 정보시스템을 사적인 일로 사용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이를 이용하여 게임, 도박 및 음란물 시청 등 업무상 용도 외에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금지)

임직원의 본인 또는 배우자를 포함한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의 정의에 따름)이 운영하거나 지분을 가진 업체와 거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직원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이 특허 또는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것, 또는 회사가 반드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및 이사회의 사전 승인에 의하여 거래가 가능하다.

제2장 위반시의 처리

제14조 (위반사항에 대한 상담)

-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규범의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와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위반행위 신고와 보고)

- ① 임직원은 회사 임직원이 이 제반 법령 및 윤리경영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 홈페이지에 개설된 신고함을 통하여 감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 회사대표, 재무담당임원, 감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담당임원(Eddie.Choi@macquarie.com)에게 직접 신고한다.
- ② 감사는 회사 대표, 재무담당임원에게 신고 사실을 즉시 보고한 후, 신고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 받은 다음, 그 결과를 회사 대표 및 재무담당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회사 대표, 재무담당임원, 감사에 관한 사항의 경우 이사회 담당 임원이 이사회에 신고 사실을 보고한 후, 신고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로부터 소명 자료를 제출 받은 다음,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③ 회사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고인은 무기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제16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이 규범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이사회, 회사 대표 및 재무담당임원은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신고인에 대한 통지)

이사회 및 감사는 위반자에 대한 조치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범은 2022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